

전기 Q&A



■ HIV(300/500V)기기배선용 절연전선의 옥내배관용 배선

관련조항 _ 판단기준 제4조

Q. HIV(300/500V)기기 배선용 절연전선의 일반배선용(옥내배관배선 : 전등, 전열설비)으로 사용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. HIV(300/500V KS C IEC 60227-3의 5-8은 기기 배선용 전선을 사용하여 옥내 배관용 배선으로 전등 및 전열설비에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. 사용가능 여부를 명료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- A.**
- KS C 3328(HIV 전선)은 KS에서 2009.10.27 폐지한 전선입니다.
 - KS C IEC 60227-3에서 01~02, 05~08의 명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.
 - 01 : 450/750 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
 - 02 : 450/750 V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전선
 - 05 : 300/500 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(70℃)
 - 06 : 300/500 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전선(70℃)
 - 07 : 300/500 V 기기 배선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(90℃)
 - 08 : 300/500 V 기기 배선용 유연성 단심 비닐 절연전선(90℃)
 - KS C IEC 60227-3에서 01~02는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의 저압 배선용 절연전선(고정 배선용 절연전선)으로 사용하는 전선이며,
 - KS C IEC 60227-3에서 05~08은 기기 배선용 절연전선으로 냉장고, 세탁기 등의 전기기기 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으로서 05~08은 저압 배선용 절연전선(고정 배선용 절연전선)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 KEA